

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

다빈도 부당청구 사례

[가정방문형 급여]

2026. 6.

부당사례

○○방문요양센터의 ①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 갑에게 2000. 0. 00.(총 0회), ② 요양보호사 B는 수급자 을에게 2000. 00. 00., 00. ~ 00.(총 0회), ③ 요양보호사 C는 수급자 병에게 2000. 0. ~ 2000. 0.(00개월, 총 000회) 기간 동안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,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

적용 기준

－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 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,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사실대로 급여제공기록지(RFID포함)에 작성(전송)하고 이를 근거로 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에 규정한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.

관련 근거

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및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2023-289호(2023.12.29.) 제16조(재가 급여제공시간 등) 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

※ 본 자료에 표기된 '고시'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를 '법(시행령·시행규칙)'은 「노인장기요양법(시행령·시행규칙)」을 의미함

부당사례

○○○○○○○복지센터는 A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데 있어, 전자태그를 수급자 자택에 부착하지 않고 A 요양보호사가 소지하면서 태그 전송을 하고, 사회복지사가 방문할 때 일시적으로 수급자 자택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속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음

적용
기준

-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(이하‘고시’) 제2023-289호(2023.12.29.)~제2025-115호(2025.7.1.) 제6조(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), 제15조(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), 제16조(재가급여 제공시간 등), 제17조(방문요양급여 제공 기준), 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, 제19조(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)에 따라, 장기요양급여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한다.

관련
근거

- 고시 제15조(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), 제16조(재가급여 제공시간 등), 제17조(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), 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, 제19조(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)

3

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

부당사례

○○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 갑에게 20**.**. 수급자 을에게 20**.**, 요양보호사 B는 수급자 병에게 20**.**. 방문요양급여제공 시간 중에 요양보호사 개인 병원진료로 실제로는 15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18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시간을 늘려 급여제공기록지(RFID 포함)를 작성(전송)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

적용
기준

- 가정방문급여는 등록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(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)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(RFID 전송 포함)에 사실대로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청구해야 한다.

관련
근거

- 고시 제6조(장기요양급여의 절차 등), 제15조(가정방문급여원칙), 제16조(재가급여 제공시간 등), 제17조(방문요양급여제공기준), 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, 제19조(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)

4

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기준 위반

부당사례1

○○재가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의 급여제공시간 중이 아닐 때 수급자 자택을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업무수행한 것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음

부당사례2

○○재가기관은 실제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A사회복지사는 B사회복지사 등의 휴대폰을 들고 가서 전자태그를 전송하고 B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

적용
기준

- 고시 제57조(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)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.

관련
근거

- 고시 제57조(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)

부당사례1

○○방문요양센터는 수급자 갑에게 요양보호사 A, B는 20**. *. 20**. *. ~ **, 20**. **. ~ 20**. *. (총 **개월) 기간 동안 방문 간격 없이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하였으나, 사실과 다르게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다회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(RFID포함)를 작성(전송)하여 급여비용 청구하여 지급받음

적용
기준

-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하는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,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하여야 한다.

관련
근거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2022-301호(2022.12.28.) 제19조(방문 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)

부당사례

○○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부부 수급자 갑, 을에게 20**.*~20**.* (총 *개월)기간 동안, 요양보호사 B는 부부 수급자 갑과 을에게 20**.*~20**.* (총 **개월)기간 동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1인에게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나, 수급자 2인에게 동시간대에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

적용
기준

-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며,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,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,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함. 또한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,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 시간대에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

관련
근거

○ 고시 제15조(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), 제17조(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)

부당사례

○○방문요양기관의 프로그램관리자 A는 20**.**. 수급자 갑, 을에게, 20**.*. 수급자 병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방문하지 않아 해당 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급여비용 청구하여 지급받음

적용
기준

-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하고,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프로그램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.

관련
근거

- 고시 제17조(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), 제19조(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)

부당사례

○○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 갑에게 A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중에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월에 모든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시간 중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가산점수를 100% 적용하여 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

적용
기준

-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은, [가산금액 =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× (가산점수의 합/입소자수) × 서비스 유형점수]의 식에 따라 산출하며, 수급자 수의 90%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산점수의 80%를 산정한다.

관련
근거

- 고시 제54조(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), 제56조(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), 제57조(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), 제58조(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)

부당사례

○○재가기관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에 수행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음

적용
기준

- 고시 제69조의2(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)

- ①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수의 50%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5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%를 산정한다.

관련
근거

- 고시 제69조2(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)
- 고시 제57조(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)